

데이터베이스(DB)의 법적 보호방안



신 각 철
(법제처 법제연구원)

“94년으로 예정된 정보통신시장 개방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산업의 근간으로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법적 보호를 위한 첫 시발점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지난 6월 22일 DB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관련업계에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내년중 시행될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DB의 자산권화와 이의 보호를 위해 제고되어야 할 입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1. 법적 보호의 필요성

정부에서는 저작권법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문화체육부 공고 제1993-20호, 1993. 6. 22 공고).

문화체육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중에서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편집저작물 보호」를 명시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고도로 발달된 각종의 미디어를 통하여 대량의 정보가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 정보중에 유용한 정보를 신속·정확·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정보를 컴퓨터와 통신망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형태화·체계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종전의 저작권법에서 편집 저작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논의도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권리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에 관해서는 종전에는 그 자료(data)의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선택·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을 인정

(이 글은 필자 소속기관과 전혀 관계없으며 개인의 의견임을 밝힘)

하고,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 이에 관하여 다른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백과사전류와 같이 편집저작물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용어가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단순한 편집저작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등 전산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검색 가능하게 체계적으로 구성된 정보의 집합체」로서 컴퓨터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적이고 창작적인 키워드의 부여, 신속하고 유용성있게 그리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입출력설계 등등 종래의 편집저작물과는 전혀 다른 기술적 작업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편집저작물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권리보호의 대상으로 설정(신설)할 필요가 있다.

2. 법적보호의 방향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보호는 이미 일본등 외국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방법이 실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법적보호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관련기관·단체등에서 서로 다르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가. 공업소유권법적 산업재산권 측면에서의 보호문제

데이터베이스는 산업·경제 및 기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허법등에 의한 산업내실화 측면에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보다도 더욱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모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특허법적 측면에서 보호할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①권리보호의 번잡화·장기화, ②발명으로서의 요건미비(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님) ③심사의 곤란성 ④특정 DB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강화로 인한 전반적인 DB산업발전의 저해, ⑤권리보호기간(15년~20년)의 단축으로 인한 DB개발 의욕상실등 오히려 DB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방법이 아니다.

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문제

데이터베이스는 그 작성과정에서 편집저작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법의 원리로 보호하되, 창작성문제보다는 정보의 선택·배열등에 있어서 체계성을 강조하여 별도의 저작물(DB저작물)로 구분·명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보호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입법례가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문화체육부)의 입법예고도 저작권법의 보완·정비를 통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다. 특별법에 의한 보호방법

데이터베이스는 그 제작과정에서 편집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만, 정보의 축적·처리·전송등의 측면에서는 전자기술

적 특성과 정보통신기술적 성격이 강조되고, 정보의 이용측면에서도 산업·경제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저작권물과 같이 단순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작권법의 기본정신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면(저작권법 제1조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문화적 측면보다 산업·경제·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소극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보호·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되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정에서 자료의 선택·배열 및 체계화와 관련하여 완전히 DB화하여 유통·이용하기 이전의 단계는 어디까지나 편집저작물이며, 법적 보호방법에 있어서도 장기간 법이론이나 관행을 통해 국제적으로 정착되고 통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원리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DB를 별도의 저작물로 분류·명시하고 DB의 특수성에 맞도록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DB는 산업·기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호·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법 측면에서 보호하되 그 등록·관리를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입법례가 있으며, 프로그램보호에 크게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없고, 일본의 경우는 프로그램 등록에 관해서 별도 입법을 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등록·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3. DB산업의 관리영역 문제

가. 소관부처별 지원·육성

DB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리논쟁을 떠나서, DB가 정보산업의 핵심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DB산업의 육성·지원 등 관리측면에서도 국가의 산업·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모든 DB는 문화체육부의 소관이어야 한다든가, 정보통신매체에 의하여 처리·전송 또는 이용되기 때문에 체신부의 소관이어야 마땅하다든가, 아니면 산업기술적 성격이 강하니까 상공자원부의 소관이라는 등 부처간의 영역 다툼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DB의 내용·성격 및 이용측면에서 각 부처간의 고유업무에 따라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행정정보의 DB구축은 총무처에서, 법령DB는 법제처, 건설정보관련 DB는 건설부, 농어촌정보화와 관련된 DB는 농림수산부, 산업기술정보는 상공자원부, 고용관리정보는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육성·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등록 및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

이와 같이 각 소관부처의 업무영역에 따라 육성·개발한 DB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DB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의 등록과 같이 DB의 특성에 맞게 일반저작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등록제도를 채택함으로써 ①DB개발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②등록부의 공개·공시등을 통한 DB이용의 활성화 촉진 ③이미 개발된 DB관련 정보의 홍보 등 통합관리, ④유사한 DB의 난립 등 중복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별도 입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같은 통합관리의 주무부처를 체신부로 할 것인가, 문화체육부 또는 상공자원부로 할 것인가하는 부처간의 이해가 문제되었으나 DB가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이라고 볼때 창구역할은 체신부로 하되 문화체육부 상공자원부 뿐만 아니라 총무처, 통계청등 DB산업과 직접 관련이 많은 부처끼리 긴밀하게 협의하면 될 것이다.

또한 DB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등록·관리업무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와 같은 DB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4. DB의 법적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언

가.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해야할 사항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DB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필요한 조항을 신설·보완하여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다음 사항을 추가·보완하여야 한다.

(1) 용어의 정의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용어정의」규정중 제12호 컴퓨터프로그램 다음에 제12호의 2를 추가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정의 규정을 두었으면 한다.

12의 2. 데이터베이스 :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정보의 집합물로서 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2) 저작물의 예시

현행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예시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는 제1호의 소설·시·논문 등과 제2호 음악저작물을 비롯하여 제9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상세하게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예시하였다. 여기에 제10호를 추가·신설하여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예시해야 한다.

10.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3)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방법 명시

현행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 저작물」, 제6조의 「편집 저작물」의 보호규정과 같은 취지로 제6조의 2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조항을 추가·신설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2 (데이터베이스저작물)

- ①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보호는 그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편집저작물과 구분하여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창작성보다 체계성등 그 특성에 맞도록 독립적으로 별도 보호하되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별도의 등록제도 채택근거 명시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등록은 ①권리관계의 명확화, ②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유통의 원활화, ③중복투자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별도 입법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근거조항을 두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 제2항 제10절 등록(제51조~제53조) 규정에 「제5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추가·신설한다.

제53조의 2 (데이터베이스 등록)

제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등록과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 관계부처와의 협의 명시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특성상 산업·기술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시행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일반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도로 체신부·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하도록 저작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제6조의 3을 추가·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3 (데이터베이스저작권 보호

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체신부장관 기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Current Dir: C:\OFFICE				Bytes Available: 1550336				File Count: 32			
Open DB: (none)				Sort Key:				Num Selected: 0			
								View: DOS			
..	AKIRA	DB10	DIABLO	EAGLE	EAGLE	HANAKO	HARRY				
	INVOICE DOC					LETTER DOC					
IKUKO	INVOICE	JANE	JENNY	JOHN	KEN	LETTER	LOGIN				
MOTOMO	NORIKO	PRISM	RICHARD	SACHIE	STEVE	STOPUP	STOPUPS				
THOMAS	TIF4	TOM	ULTCALC	ULTCALC	ULTWORD	ULTWORD	XTOOLS				
Esc Exit: F1 Help: F2 DB View: F3 Execute: F4 Display: F5 Add to DB											
F6 Convert: F7 Print: F8 Copy/Move: F9 Select: F10 Change Dir: Delete +Alt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은 산업·기술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보호등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결정·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당연한 법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저작권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시행하고 있는 「저작권법시행령」으로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포괄하여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작권법시행령 제7조의 「저작물의 이용신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동시행령

제13조에 저작물 법정이용신청에 있어서의 보상금 공탁 등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기술적 측면과 이용등에 있어서의 판단은 문화체육부의 소관 보다는 산업정보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요원이 확보된 상공자원부 또는 체신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저작물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규정」(가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㉔

(「DB등록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은 다음호에 수록예정)